

종합위험관리 센터로 육성 필요



박 은 회
(성균관대학교수·
위험관리학회회장)

1. 화보폴 해체의 배경

그동안 화보협회가 주관해오던 우리나라의 화재보험폴을 3단계로 완전히 해체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 성과는 앞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폴의 형성 과정과 해체배경을 살펴보고 화보협회가 나아가야할 진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화보폴의 탄생 배경은 1962년 당시의 혁명정부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실시한 보험회사 특별감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해의 우리나라 손해보험료는 6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화재보험이 71%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해상보험 26%, 자동차보험 4% 등이었으며 특종보험은 전혀 실적

이 없었다.

감사결과,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에 대한 화재보험은 폴을 조직하여 공동인수하라는 내용이 보험육성시책에 담겨있었다. 이유는 화보시장의 약80%를 점하고 있던 이 분야에 경쟁이 집중되어 사업비율이 45%나 되어 다른 분야의 시장개척은 부진했다는 것이었다.

그후 73년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특수물건의 보험인수를 화보협회가 담당하게 되자 「금융폴」도 편의상 통합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16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손해보험시장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보험료수입도 89년도에는 2조6천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62년과 비교하면 명목상 4천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화보시장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손해보험의 8%를 점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동안 화보협회가 폴을 운영해 오면서 사업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회원사들은 새 시장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방재 활동을 통한 화재위험 감소로 경영수지가 많이 개선되었던 것이다.

폴이 해체될 경우 제한된 시장에서의 소모전이 확대되어 코스트는 다시 상승할 것이고,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이 이원화됨에 따라 언더라이팅이 방만해져서 수지가 악화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재보험의 비중은 8%에 불과하며, 더구나 풀의 비중은 3% 내외이기 때문에 종합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개선을로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화보험회의 위상

화보험회의의 설립근거가 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의 제정목적은 네가지 이다.

첫째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 둘째는 신속한 재해복구를 보장하는 것, 셋째는 인명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 넷째는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또한 법11조에서 화보험회의의 설립목적은 보면 ① 화재 예방 ②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③ 연구사업 ④ 계몽사업 등 네가지로 되어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법은 화재예방과 강제보험에 관해서 규정한 것이지만, 화보험회의의 설립목적은 예방사업이었으며 보험사업은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풀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화보험회의는 당초의 설립목적

에 따라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 법은 새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대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와도 일치하는 이상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립대학의 「위험관리 및 보험연구소」 소장 Skipper교수가 UNCTAD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법령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그 사례로서 화재위험의 관리와 건축의 안전규제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화재위험의 관리와 관계되는 법률이 여덟가지가 있다.

①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화벽, 내화구조, 비상급수설비, 피난시설, 소화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은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시공사의 자격, 정기검사, 안전관리 규정의 승인, 위험예방조치, 안전관리자의 채용,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시설기준,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의 채용, 정기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은 시설기준,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의 채용, 정기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전기공사업법」은 면허기준, 전기기술자의 자격, 공업규격표시품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⑥ 「소방법」은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대상의 검사,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의 허가와 검사,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와 완공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⑦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⑧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의 의무화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위험관리조직, 담당자교육, 위험통제, 보험가입, 기금의 출연, 책임제한 등을 8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기관도 내무부·재무부·동자부·건설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지난 11월 한국위험관리학회가 조직되어 앞으로 분야별 연구활동이 전개되겠으나 화보험회는 보험회사를 배경으로 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으로서 이들 조직을 규합하여 종합적인 「화재위험 관리센터」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3. 문제점과 개선방향

풀이 단계적으로 해체되면 화보험회는 앞으로 세가지의 해결해야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리라고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보험사업의 원활한 이관이고, 둘째는 방재사업의 발전적 전개이고, 셋째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일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보험사업의 원활한 이관으로, 회원사로 이관된 부모물건에 대해 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할인등급을 사정하게 될 것이므로 인수가 다시 언더라이팅 서비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회원사에 제공하여 보험인수로 연결시키는 절차가 표준화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해체의 원칙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회원사가 단독인수하기 어려운 대형물건이나 국공유 또는 방산업체 등은 회원사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인수가 가능할 것이며, 이런 경우 협회에 그 업무를 맡길 수도 있으리라 고 본다.

이 밖에도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사 단독으로 조사하는 것이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기술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제3의 기관인 협회에 원인조사와 손해액의 평가를 맡길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방재사업의 발전적 전개에 있어서는 우선 안전점검의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고층건물의 개념을 4층 이상으로 한 것은 소방시설이 발달한 오늘날의 실정에는 맞지 않으므로 10층 이상 정도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그 대신 대상지역을 7개도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장이나 그밖의 물건도 그 대상의 규모를 높이는 대신 지역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험·조사·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화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난·폭발·자동차사고·항공사고·해상사고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은 확대하여 종합적인 손해보험사업의 위험관리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회원사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험시설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만든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동시에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품질보증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방설비·소화기기·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되는 안전관련제품에도 모든 수입국의 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계약을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국산품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원조달문제는 세가지 원천이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① 풀이 존속될 때까지는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겠으나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② 수익사업으로 회원사가 직접인수하는 계약의 안전점검과 할인등급사정은 이른바 언더라이팅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이는 인수가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밖에도 대형물건·국공유재산·방산업체 등의 공동인수를 담당하거나 대형사고의 손해사정을 담당하게 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기업의 위험조사나 품질보증업무를 활성화하면 재원의 일부가 조달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이상의 두가지 방법만으로는 협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부족액은 회원사가 분담해야 하리라고 본다. 분담원칙은 우선 선진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화재예방비」로 화재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협회가 앞으로 「위험관리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손해보험료 총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떤 방법이 채택되더라도 특별법에 의한 강제보험이 존속되는 한 화보험회는 존속되어야 하고, 손해예방을 통한 보험경영수지의 개선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하므로 제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책임은 손보업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화보험회가 풀해체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방재협회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다해줄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